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의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62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종균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
3. 회부연월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항 등).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제5항).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¹⁾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또한, 개정안은 위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의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 시에 연계하여 함께 개정이 필요한 다음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첫째, 해당 직원이 별정우체국 퇴직 당시 받은 급여액은 반납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둘째, 군인연금의 퇴역연금 수급자가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역연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정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셋째, 별정우체국 직원이 재직기간 합산 후 군인으로 퇴직 또는 사

1) 「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망한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 ④ (생략)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퇴직한 <u>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u>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⑤ ----- <u>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u>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 -----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① (생략)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8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을 제47조에 따른	② ----- ----- ----- -----제38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 ----- ----- ----- -----

현행	개정안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다)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조기퇴직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 5. (생략) ② ~ ⑤ (생략) 제46조(연금액의 이체)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군인으로 임용되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복무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	----- -. ----- -----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 -----. 1.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연금액의 이체) ① ----- ----- ----- -----

현행	개정안
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그 퇴직자 또는 유족(제12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생략)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또는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 ② (현행과 같음)

□ 별정우체국 직원 수는 2024년 12월말 기준 3,224명이고, 연금수급자는 2,793명으로, 다른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비교하여 소규모 직역연금임.

[별정우체국 직원 및 연금수급대상자 현황(2024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별정우체국	직원수				연금수급자
	국장	사무원	집배원	계	
672국	672	1,353	1,199	3,224	2,793

자료: 국방부 제출

□ 현행법 체계에서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근거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합산하는 경우 합산의 구체적인 방법, 타 직역으로 전환 시 연금의 지급정지, 연금액의 이체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 역시 군인연금 등과 유사한 직역연금으로서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도 군인연금법 등에 복무기간에 합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정우체국직원의 인사관리 체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복무기간 합산의 적정성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별정우체국장 직위는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추천에 따라 별도의 공개적 선발절차 없이 임용될 수 있는 등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과는 상이한 인사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합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도적 형평성

및 공적 직역연금제도의 취지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의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과 함께 이와 기술적으로 연계된 기타 개정 사항들에 대하여도 일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²⁾

□ 관계 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공무원 등 다른 특수직역과는 다른 인사관리 체계, 군인연금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우정사업본부는 현행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은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안 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법 간 형평성 도모, 연금수급권 보호를 통한 퇴직 후 생활 안정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은 퇴직한 군인이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복무기간을 별정우체국

2) 기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해당 직원이 별정우체국 퇴직 당시 받은 급여액은 반납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둘째, 군인연금의 퇴역연금 수급자가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역연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정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셋째, 별정우체국 직원이 재직기간 합산 후 군인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윤종균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임.³⁾

문 의 처
02)6788-5304

3) 제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개정취지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451호)이 발의되었으나,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 후 임기만료폐기되었음.